

#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 and Similar Systems in Korea

김 현 지\* Hyun-Jee Kim  
신 아 름\*\* Ah-Reum Shin  
채 수 홍\*\*\* Soo-hong Chae

I 목 차 I	
I. 서 론	IV. 시사점
II.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의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유사체제의 비교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전략물자 CP)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전략물자 CP)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략물자 CP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C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

\*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제1저자  
\*\* 전략물자관리원 기획관리팀 선임연구원, 교신저자  
\*\*\* 전략물자관리원 기업지원팀 팀장, 제2저자

제의 지정제 운영방식에서 등록 후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최근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수출통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 캐치올(Catch-All) 통제 등 비정형화된 수출통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형화된 접근방법에 의한 수출통제는 심사인력의 확대, 조사대상 정보범위의 확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 주도의 수출통제제도로는 인력, 예산 등 행정자원의 제약이 따르므로, 점차 강화되는 국제수출통제의 제도적 흐름에 동참하고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 갈수록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인 수출통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강병준, 2011).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하나인 바세나르체제(WA)에서는 수출자의 자율적인 수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준수인지, 수출통제 전담 조직, 수출관리 업무절차, 교육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자율준수 최적관행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회원국에게 권고하고 있다.<sup>1)</sup> 또한 미국은 상무부에서 발간한 자율준수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 내 자율준수체제 구축이 미국 안보와 비확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기업 환경에 맞게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sup>2)</sup> 한편, 일본은 2010년 외환법에 근거한 '수출자 등 준수기준을 정하

1) Wassenaar Arrangement, 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for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greed at the 2011 Plenary.

2)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pliance Guidelines : How to develop an effective export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and manual, February 2010.

는 성령'을 시행하여 수출자를 전략물자 수출자와 그 외 수출자로 구분하여 준수기준을 정하고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자가 동 준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사실상 의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이행을 장려하고 있는데, 일정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포괄허가 등 수출절차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외무역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대상을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수출관리 이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별 특성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도입이 가능해졌다.<sup>3)</sup> 그러므로 자율준수체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확대가 수출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거버넌스적 수출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와 국내 유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이와 유사한 국내 제도인 AEO 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운영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 II 장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와 국내 유사제도인 AEO 제도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으며, 제 IV 장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

3) 대외무역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참조.

## 2. 선행연구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다른 국가와의 제도적 비교를 통하여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희용 외(2007)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활용하여,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수출통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개발을 위해 수출기업은 전략적 수출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수출관리를 이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정부측면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지(2008)는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전략물자 관리업무에 대한 기업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신뢰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원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충배, 신창욱(2011)은 자율준수제도에서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더 많은 기업들을 제도에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심상렬 외(2011)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노력과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의 강화, 자율준수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그리고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앞의 선행연구들은 주요국의 전략물자 CP 제도와 비교하여 한국의 자율준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와 차별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CP 등급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와 국내 유사 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자율준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의 이론적 배경

### 1. 도입 배경

전략물자(strategic items)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 무기 및 이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등으로 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이 체제에 가입한 각 국가에 의해 전략물자가 불량 및 확산국가와 테러조직에 이전되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허가 등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25조에서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에 의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절차 및 제도인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지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이하에서 ‘CP’<sup>4)</sup>)란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심사를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즉, 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CP로 지정되면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 등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자율적인 관리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는 2004년도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자율준수체제의 정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감사와 지정철회 등을 규율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까지 CP 지정 업체 수는 7개 사로 지정 실적이 미미했으므로, 입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7년에 대외무역법을 일부 개정하여 CP 제도를 대외무역법에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CP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한 결과 2007년 이후 매년

4)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CP(Compliance Program, 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무역거래자를 의미하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CP”로 표현하였다.

평균 30여 개 사가 지정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13년까지 CP로 지정받은 업체 수는 총 213개 사이다. 2014년에는 CP 등급제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CP 기업들이 등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74개 업체가 등급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표 1> 전략물자 CP 지정 업체 수

(단위: 개)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업체수	4	3	24	33	34	32	20	35	28	-39
(누계)	(4)	(7)	(31)	(64)	(98)	(130)	(150)	(185)	(213)	(174)

자료: 전략물자관리원

2014년 1월 말 대외무역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범위를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CP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동일한 지정요건을 모든 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업의 수출관리 수준과 기업의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의 무역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CP 등급제 도입을 통해 지정 요건의 수준에 따라 A, AA, AAA 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업은 자사의 자율준수체제 구축 수준과 규모 및 업종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CP 지정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또한 CP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전략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허가의무를 주로 이행하게 될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2. 주요 내용

### 1) 지정 요건 및 심사

#### (1) 지정 요건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운영하되, 자율 수출관리 기구를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고책임자에서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CP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 자율수출관리기

구의 조직,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sup>5)</sup>

## (2) 지정 신청 및 심사

전략물자 CP는 등급심사기준에 따라 A, AA, AAA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CP 지정 신청은 법령에서 정하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율수출관리규정,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지정신청서, 회사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한다.<sup>6)</sup> 신청자격은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AAA등급의 신청은 AA등급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경과한 자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CP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지정 신청자에 대한 서면 및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전략물자관리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전략물자 CP의 지정 여부 및 등급의 결정, 지정 변경 및 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CP 지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되며,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다.

## (3) 사후관리 및 특례

CP 지정 기업이 준수사항 등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준수체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현황 및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보고는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보고(운영보고)와 허가건별 포괄허가수출실적 및 관련 자료 보고(실적보고)로 구분된다. 운영보고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에 대한 연간 현황을 다음 년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의 경우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실적을 A와 AA 등급은 반기, AAA는 연간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CP 지정 기업에 대해 감사는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의 준수여부와 보고의무 사항 등에 대해 감사한다.

또한 전략물자 CP 도입 기업에게는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주요 특례로서 심사면제, 서류면제, 허가면제, 허가처리기간 단축, 포괄허가 등이 있으며 등급별 및 수출 지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하다.

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 71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참조.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제2, 3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2조 및 제74조 참조.

<표 2> 전략물자 CP의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A	AA	AAA
'가'지역	■ 개별허가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별 허가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 4. 수출자의 해외 지점	허가면제 (7일 내 보고)	허가면제 (7일 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 보고)
	■ 사용자포괄허가	가능(3년)	가능(3년)	가능(3년)
	■ 품목포괄허가	-	가능(3년)	가능(3년)
'나'지역	■ 개별허가	-	-	서류면제
	■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별허가 1. 수출자의 최대주주 2. 수출자의 해외 본점 3.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 4. 수출자의 해외 지점	서류면제	서류면제	심사면제
	■ 개별허가 처리기간	15일	10일	5일
	■ 사용자포괄허가	-	가능(2년)	가능(3년)
	■ 품목포괄허가	-	-	가능(3년)
지역 공통	■ 동일 수출 건(동일 품목, 동일 최종 사용자)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 암호화 품목 수출, 최종 사용자의 최대 주주가 한국 법인인 민간 기업이고, 최종 사용용도가 내부 시스템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일 때	허가면제 (7일 내 보고)	허가면제 (7일 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 보고)
	■ 계약체결 없이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	허가면제 (7일 내 보고)	허가면제 (연간 보고)

주: 민감·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허가의 특례 및 포괄허가 신청자격의 적용 제외

자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Ⅲ.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와 국내 유사제도의 비교 연구

#### 1.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제도

##### 1) 도입배경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권고하는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 관세당국이 특정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등 통관행위가 적법하고 무역공급망에 대한 안전성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임을 공인하고,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통관단계에서의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관세법령에 근거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종합인증우수업체(AEO)로 공인하는 제도(이하에서 'AEO 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업무 위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심사 전담인력 구비 및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설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7)</sup>

##### 2) 인증기준

AEO 심사 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규준수는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최근 2년(8분기) 동안 관세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로서 교육,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문서화 등의 요건에 대한 것이다. 재무건전성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면서 채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안전관리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 등 총 8개의 각 분야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

7) 관세법 제255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 참조.

<그림 1> AEO 공인 기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1. 결격사유(관세법 제 175조) 2. 전자문서 위조 등 3. 무역관련 법령위반 4. 법규준수도 점수 평가	1. CEO의 의지, 경영 방침 2. 법규준수 및 안전 관리 목표 3. 윤리경영 방침 ... 12. 내부통제 평가	1. 기업규모 2. 재정건전성	1. 거래업체 관리 2. 운송수단 등 관리 3. 출입통제 관리 4. 인사관리 5. 취급절차 관리 6. 시설과 장비 관리 7. 정보기술 관리 8. 교육과 훈련

AEO 등급은 4가지 부문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에게 등급을 부여하되,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A등급, 90점 이상이면 AA등급을 책정한다. AA등급 업체 중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모범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AAA 등급을 부여한다. AEO 공인에 따른 혜택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적용 업종별로 혜택이 구분되어 있다.

<표 3> AEO 공인의 등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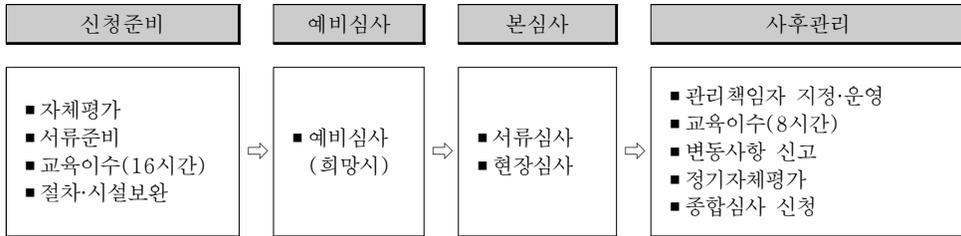
구분	A	AA	AAA
재무건전성	적정 유지	좌동	좌동
안전관리	충족	좌동	좌동
내부통제시스템	80점 이상	좌동	좌동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이상, 법규준수도 제고 관련 모범사례 보유

### 3) 공인 절차

AEO 공인 절차는 크게 신청 준비, 예비심사, 본심사<sup>8)</sup>, 사후관리로 이루어진다. 공인 신청은 법규준수도<sup>9)</sup>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8) '본심사'라는 용어는 '예비심사'와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사용한 것으로 실제로는 '심사'로 통용된다.  
 9) 법규준수도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자를 관세청장이 통합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측정한 업체별 통합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중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

<그림 2> AEO 공인의 진행절차



예비심사는 기업의 원활한 AEO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신청 전에 서류의 적정성과 수출입 관리현황의 공인기준 적합성 등에 관하여 사전 점검을 하는 제도이다. 예비심사는 AEO 진흥협회에 의해 업체별 총 3회, 1회 총 4시간까지 실시하며, 중소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적용대상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본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신청업체의 AEO 공인 기준 준수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AEO 진흥협회 내에 있는 공인심사팀에 의해 서류상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며, 서류심사 중 심사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관세청 심사정책과(AEO 센터)의 현장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는 실지심사이다. 현장심사를 마치면 심사결과를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인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4) 사후관리 및 특례

공인 등급별 유효기간은 A와 AA등급 4년, AAA등급은 5년이고, AEO 공인 심사 관련 비용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모두 무료이다.

<표 4> AEO 공인의 혜택 부여 원칙과 방향

구 분	혜택 부여 방향
검사간소화	수출입검사 선별비율 최소화, 우선검사, 희망지 검사
절차간소화	서류제출 생략 최대화, 자율정정항목 확대, 서류심사 후 승인항목 최소화
	ERP에 의한 세관신고 허용
	자율사후관리 허용
자금부담 완화	국제공항 입출국시 편의제공,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별 제외
	신용담보한도 확대, 월별납부 월별보정 허용 사후심사 환급심사 기획심사 원칙적 면제
기 타	행정형벌 보다 행정질서벌 위주 고려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경감)

특히,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이 용이하도록 하고 AEO 기업의 사후 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개선내용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신청을 위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어 적용하고, 심사 대상기간을 기존 2년(8분기)에서 2분기로 단축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에 등급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공인 유효기간을 등급에 관계없이 5년으로 일원화하였다(관세청, 2014).

### 5) 전략물자 CP와 AEO의 비교

전략물자 CP와 AEO 공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심사를 통해 인증하고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전략물자 CP 제도와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다. 즉 AEO 공인 제도는 수출입공급망 전체의 안전 관리를 정부가 모두 담당할 수 없다는 행정 자원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이끌어냄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버넌스적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 CP 제도와 매우 유사한 목적과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전략물자 CP 제도와 매우 유사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몇몇 측면에서 전략물자 CP 제도와 AEO 제도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기관 간 업무분담에 있어서 AEO는 공인 절차상 예비심사를 두어 신청인이 희망할 경우 서류의 적정성 및 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략물자 CP 제도의 경우 예비심사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둘째, 등급결정방식에서는 등급체계가 A, AA, AAA 등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은 AEO와 전략물자 CP 제도가 서로 동일하나, 등급 결정방식이 AEO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으로 결정되는 반면, 전략물자 CP 제도에서는 등급별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합 여부 심사를 통해 등급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또한 유효기간의 경우에도 AEO 제도는 5년인데 비해 전략물자 CP 제도는 3년으로 상이하다.

##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1) 도입배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반경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다양한 규제 수단들을 적용하여 이들 행위를 억제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법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10)</sup> 이처럼 사후적 법 집행에만 의존하여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자율준수프로그램을 2001년에 도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에서 ‘공정거래 CP’)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자체적인 프로그램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 2) 등급평가 기준

기업이 공정거래 CP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등의 7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CP는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신청에 의해 CP 기업으로 등록되며, 신청 방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명, 도입일, 업종 등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13년까지 550개사가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2013).

그러나 기업 스스로 경쟁규범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CP 제도가 과징

---

10) 업계 및 기업체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기적 대처의 어려움, 경쟁 당국의 행정비용 발생, 기업의 제재 시 비용 발생 등을 언급(공정거래위원회, 2012).

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법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분야에서 2006년 CP 등급 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즉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CP 운영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공정거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쟁문화 확산을 도모하게 되었다. 공정거래 CP 등급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고, CP 도입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업무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등 평가기관과 평가지원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등급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내부지침으로 제정한「CP등급평가 운영 및 평가 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 3) 등급평가 절차

공정거래 CP 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서류평가, 심층면접평가, 현장방문평가, 평가결과 분석, 등급부여 대상 확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 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총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부여된다.

<표 5> 공정거래 CP의 등급평가 절차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하고,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 1·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평가제외 및 등급부여 대상 확정	■ 평가신청기업 중 평가제외 대상(규정 IV.1.나), 등급부여 보류((규정 IV.5), 등급 미부여 대상을 확정

자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참조.

1단계 서류평가는 세부 평가 지표별로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평가위원회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평가기준은 CP 프로그램 구축(Construction), 문화 확산(Diffusion), CP 프로그램 운영(Operation), 성과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Evaluation) 등 4가지 차원과 각 차원별 총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평가지표 22개, 세부평가지표 38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평가지표 17개, 세부평가지표 28개가 적용된다.

<그림 3> 공정거래 CP의 등급평가 기준

CP 구축 (Construction)	CP 문화의 확산 (Diffusion)	CP 운영 (Operation)	CP 성과평가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1. CP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li> <li>■ C2. 최고경영진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1. 자율준수편람</li> <li>■ D2. 교육훈련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1.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li> <li>■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지속적 개선</li> </ul>

각 평가항목마다 배정된 약 2~3명의 평가위원은 전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받은 평가항목에 대해 7단계 척도(A+, A-, B+, B-, C, D, F)로 평가한다. 평가점수는 동일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도출된다.

2단계 면접평가는 서류평가 결과를 기초로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7개 평가항목을 4개 평가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평가위원이 자율준수담당자 및 실무자를 상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3단계 현장방문평가는 평가그룹의 대표자 1인이 서류평가 시 실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업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평가는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대상이 선정된다. 각 단계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AA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8개 등급(AAA, AA, A, BBB, BB, B, C, D)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 4) 특례

공정거래 CP 도입에 대한 유인은 사후적 유인과 사전적 유인으로 구분되는데, 사후적 유인으로는 과징금 감경,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기간 단축이 있으며, 사전적 유인으로는 CP 등급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해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것이다.

<표 6> 공정거래 CP의 등급별 인센티브

구분	AAA	AA	A
과징금 감경	20% 이내	15% 이내	10% 이내
직권조사 면제	2년	1년 6개월	1년
공표명령 하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행물 공표 : 공표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li> <li>■ 사업장 및 전자매체 공표 : 공표기간 단축</li> </ul>		
등급평가증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등급평가 우수기업(A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년도, 등급, 유효기간이 기재된 "등급평가증"을 수여</li> </ul>		

### 5) 전략물자 CP와 공정거래 CP의 비교

전략물자 CP와 공정거래 CP는 그 명칭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행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정부가 지정하여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하다. 그러나 몇몇 측면에서 공정거래 CP는 전략물자 CP와 차이가 있다.

첫째, 기관 간 업무분담에 있어서 공정거래 CP 등급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수행하고, CP 도입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업무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등 평가기관과 평가지원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등급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내부지침으로 제정한 「CP 등급평가 운영 및 평가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등급 결정방식에서는 CP 프로그램 운영(Operation), 성과평가 및 경영에 반영(Evaluation) 등 4가지 차원과 각 차원별로 총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은 전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배정받은 평가항목에 대해 7단계 척도(A+, A-, B+, B-, C, D, F)로 평가한다. 각 단계별로 산출된 평가점수는 등급으로 환산하여 AAA 등급에서 D등급까지 8개 등급(AAA, AA, A, BBB, BB, B, C, D)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셋째, 공정거래 CP의 등급공표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등급평가 및 결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sup>11)</sup>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반면, 도입 컨설팅, 교육, 등급평가 행정지원 등의 업무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공표기관, 평가기관, 평가지원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2

<표 7> 공정거래 CP 및 전략물자 CP의 비교

구분	공정거래 CP	전략물자 CP
지정주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급 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심의위원회)
평가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평가위원회)	전략물자관리원(평가위원회)
평가지원기관 (접수, 교육, 컨설팅)	공정경쟁연합회 (교육 <sup>12</sup> ) 및 컨설팅 유료, 회원사 10~20% 할인)	전략물자관리원
접수 시기	연 1회 이상	수시
등급	8개 등급(AAA, AA, A, BBB, BB, B, C, D)	3개 등급(AAA, AA, A)
평가기준	기업규모(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따라 평가지표를 차등 적용	기업규모(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특성(제조, 물류상사, 대학 및 연구기관)에 따라 등급심사기준 차등 적용

### 3. 전략물자 CP와 유사제도의 비교 분석

전략물자 CP와 국내 유사제도인 AEO 공인, 공정거래 CP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참조).

첫째, 평가기관과 평가지원기관을 비교해 보면, 전략물자 CP의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sup>13</sup>)에 의거 CP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컨설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EO 공인의 경우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AEO진흥협회에서는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원활한 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에서는 예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증에 필요한 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본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것으로서 컨설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 CP의 경우 평가기관과 평가지원기관을 철저히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증제도상 인증기관이 자문(consulting)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등급결정방식을 비교해 보면, 전략물자 CP 등급은 A, AA, AAA 3가지 등급으로

12)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에게 대한 교육기관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내용에 대한 일반교육 및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환급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있다.

1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6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2의2 및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구성되며, 지정 신청인은 3개 등급 중 1개 이상의 희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업유형(제조사, 상사), 기업규모(중소기업, 대기업), 등급별로 CP 등급심사기준이 달리 정해져 있어,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등급과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따라 등급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심사 결과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등급의 CP로 지정하고,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적격 통보를 하게 된다.

<표 8> 전략물자 CP와 유사제도의 비교

구분	전략물자 CP	AEO	공정거래 CP
지정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급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관세청 (심의위원회 자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회)
평가기관	전략물자관리원 (평가위원회)	관세평가분류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회)
평가지원기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AEO진흥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급	3개 등급 (AAA, AA, A)	3개 등급 (AAA, AA, A)	8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 D)
평가기준	기업규모(대, 중소, 중견기업) 및 기업특성(제조, 물류, 대학 및 연구기관)에 따라 등급심사기준 차등 적용	기업규모(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의 평가점수 차등 적용	기업규모(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에 따라 평가지표 차등 적용
교육기관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자체교육	한국AEO진흥협회	자체교육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시기 등 구체적인 규정 없음 (고시상에 교육명만 명시)	매년 공인 전 16시간, 공인 후 8시간	6개월 마다 2시간 이상

한편, 타 인증제도와 공정거래 CP의 경우 점수평가 또는 규격에 대한 적합 및 부적합 심사에 의해 등급 또는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등급 구분이 있는 AEO 공인과 공정거래 CP의 경우 등급 결정을 위하여 심사기준 또는 규격에 따라 평가결과를 점수로 도출하고, 점수범위별 등급표에 따라 평가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전략물자 CP는 신청인이 희망 등급을 선택하고 평가자는 해당 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심사를 통해 해당 등급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신청 기업의 수준에 따라 선택한 등급 심사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타 인증처럼 단일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희망 등급을 정한 후 심사를 받기 때문에 등급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IV.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와 국내 유사 제도인 AEO 공인제도, 공정거래 CP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략물자 CP 지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컨설팅 서비스와 등급평가기관의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여타 제도가 예비심사 제도를 운영하거나, 평가기관과는 별도의 컨설팅 기관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략물자 CP의 경우에도 평가위원의 제척 제도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 이수 요건의 구체화, 전략물자 판정능력의 평가 강화 및 CP 도입 확산에 대한 유인 제공 등 평가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전략물자 CP 제도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이행을 확산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정 요건을 최소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한으로 낮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등급제 도입에 따라 등급별 혜택이 차별화되는 만큼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전략물자 수출관리 역량을 키우기위한 의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일정 요건에 의해 CP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CP 기업 등록 후 일정기간 교육 등 육성 과정을 거쳐 전략물자 관리 역량에 의해 CP를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전략물자 CP의 필수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CP 기업으로 등록되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필수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 CP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서의 능력 및 요건을 제대로 갖추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고체계의 개선과 지속적 교육요건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략물자 CP는 수출통제 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자율관리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전략물자 CP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거나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한 업체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전략물자 CP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수출통제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의 경우 등급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AEO 제도 또는 공정거래 CP 등 이미 유사 제도를 도입한 업체들이 전략물자 CP를 도입하려 할 경우, 등급심사 시 상호 인정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 시간을 줄이거나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최근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정부 주도의 수출통제제도로는 행정 자원의 제약이 따르므로, 국제수출통제의 제도적 흐름에 동참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통제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체를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방안이 효과적인 수출통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율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일정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수출절차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제도와 국내 유사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략물자 CP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이수 요건의 구체화, 전략물자 판정능력의 평가 강화 및 CP 도입 확산에 대한 유인 제공 등 평가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CP 지정 기업에 대한 의무교육을 강화하여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구체적 교육요건을 명시하여 등급심사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략물자 CP의 확산과 내실화를 위하여 현재의 일정 요건에 의해 CP를 지정하는 방식에서 CP 기업 등록 후 일정기간 교육 등 육성 과정을 거쳐 전략물자 관리 역량에 의해 CP를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물자 C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보고 항목을 보완하거나 정기자체평가 체계로 변경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전략물자 CP의 확산을 위해서는 CP 도입 기업에 대한 혜택의 확대가 우

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확대의 타당성, 혜택의 범위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산업계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CP 도입의 법적 의무화 등 다양한 접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병준(2011),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정거래위원회(201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3호.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2), 「중소 및 중견기업용 자율준수 매뉴얼」, p.9.
-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3년 통계연보」, 2013, p.120.
- 관세청,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4.7.1.
- 관세청(201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3-49호.
- 김현지(2008), “전략물자의 국제수출통제와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pp.349-371.
- 동국대학교(2011), “무역1조불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관리 패러다임 조성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법무법인 대륙아주(201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 도입에 대한 연구”, 전략물자관리원 용역보고서.
- 산업연구원(2003), “Catch-all 제도와 연동된 기업내부 수출통제제도 모델 개발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201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 가이드선스」.
- 산업통상자원부(201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호
- 심상렬 외(2011),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P)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pp.297-321
- 오수근(201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용역보고서,
- 이석기(200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기업인증제 실시 전망과 대책”,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

이충배, 신창욱(2011), “전략무역자율준수제도에서의 등급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 4호, pp.119-140.

이희용 외(2007),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32권 제1호, pp.89-117.

전략물자관리원(2015),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 박영사.

전략물자관리원, 「연례보고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01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2012), 「CP등급평가 운영 및 평가기준」.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12),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2006), Cooperate Trade Practices Compliance Programs.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2012), Internal Compliance Programmes-ICP.

ISO/IEC(2006), International Standard, Conformity assessment-Requirements for bodies providing audit and certification of management systems.

Singapore Customs, Newsletter(2014): Industry 'Insiders' to help Meet Business Needs, Issue 28.

Singapore Customs, Media Release(2011): Singapore Customs Transforms Trade Facilitation Approach With New Client Engagement Framework : TradeFIRST.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Compliance Guidelines(2010): How to develop an effective export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and manual.

Wassenaar Arrangement(2011), Best Practice Guidelines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for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Agreed at the 2011 Plenary

日本 安全保障貿易情報センター(2013), 「モデルCPガイダンス」.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 and Similar Systems in Korea

Hyun-Jee Kim

Ah-Reum Shin

Soo-hong Chae

---

### •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for stabl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liance Program of strategic trade(CP)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gram and other similar systems in Korea,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system and the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

To improve the CP, training requirements should be materialized, evaluation of companies' ability to judge strategic materials should be intensified, and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companies that actively adopt the program. Moreover, the current design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the designation-after-registration system to strengthen and spread out the CP,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hould be reinforced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rogram.

---

<Key Words> Strategic Trade Compliance Program(CP), Self-Compliance Traders, 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 Fair Trade Compliance Program(CP)